

부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7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박세진, 정은영

피 고 중국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다울

담당변호사 이유진, 이호철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22. 접수 제755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22. 3. 16. ‘C는 2022. 3. 16. 원고에 대하여 금일 현재 7,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22. 10. 31.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23.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6. 22.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55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와 채무변제를 포함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증여 등 법률행위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C와 피고는 2015. 8. 22. 혼인하여 현재 슬하에 6살의 딸을 두고 있다.
- ② C와 피고는 2023. 1.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이를 공증하였다.
- C와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하며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

- C 명의로 분양받은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즉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 C 명의로 소유한 트럭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며, 기타 예금 등 재산 및 부채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그대로 소유 및 부담하기로 한다.
-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되 C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대신한다.
- 위와 같이 피고가 재산을 더 소유하기로 한 이유는 C가 사업부진으로 생긴 부채 중 4억 원 정도의 거금을 피고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등 피고가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 ③ C는 위 협의이혼 합의서에 따라 2023.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④ C가 피고와의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2억 7,000만 원이고 피고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위 협의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⑤ C와 피고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뒤 2023. 10. 31.경 협의의혼을 하였다.
-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받는 대가로 C로부터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중국 국적인 피고가 6살 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⑦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C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자녀의 나이, 협의이혼 합의서에 나타난 재산분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만을 두고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